

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

_____ 약국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이디비(주)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갑”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계약은 “갑”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하고, “을”은 이를 승낙하여 “을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 45 호)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“을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“을”과 맺은 처방전 보안시스템 이용계약 또는 약국청구 SW 프로그램 이용계약의 유지/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유지/보수에 필요한 자료열람 및 프로그램 설치와 변경 업무.
- ② 각 계약의 제 1 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공되어지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.
 1. 처방전보안시스템 이용계약 : 환자개인정보 및 환자개인의 처방정보.
 2. 약국청구 SW 프로그램 이용계약 : 환자정보, 환자내방내역, 환자의 처방조제기록, 환자의 수납내역, 청구정보, 퇴사자를 포함한 약국의 약사 및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.

제 4 조 (재위탁 제한)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“갑”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“을”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“갑”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“을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9 조, 동법 시행령 제 30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(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1-43 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“을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“을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에 따라 “을”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“갑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“갑”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 년에 2 회 이상 “을”을 교육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“갑”은 “을”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⑤ 제 4 항에 따른 “갑”과 “을”의 협의가 없는 경우 “을”은 공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는 것으로 제 3 항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손해배상) ①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기타 “을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임직원 기타 “을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갑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을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“갑”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“갑”은 이를 “을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제 9 조 (계약의 효력) ① 본 위탁계약서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한 처방전보안시스템 이용계약서 또는 약국청구 SW 프로그램 이용계약서에 붙임 되는 것이다.

② 상기 제 1 항의 이용계약서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면 본 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이용계약서가 본 위탁계약서를 대신하여 효력을 갖는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갑

대표약사 : (인)

을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58 씨스타위
403 호 이디비(주)

대 표 : 김 동 선

